[別表의2] <改正 1963·6·8, 1970·1·1>

商業地域안에 建築할 수 없는 建築物

(1) 別表의4에 해당하는 것

(2) 原動機를 使用하는 工場으로서 作業場의 바닥면적의 合計가 150平方미터를 초과하는 것(日刊新聞의 印刷所 및 作業場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300平方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自動車修理工場을 제외한다)

(3)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을 經營하는 工場

1. 玩具用 普通火工品의 製造
2. 아세찌렌까스를 사용하는 金屬의 工作(아세찌렌까스發生器의 容積이 30릿터이하의 것 또는 溶解아세찌렌까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3. 引火性 溶劑를 사용하는 드라이크리닝 또는 드라이다이닝
4. 세루로이드의 加熱·加工 또는 機械톱을 使用하는 加工
5. 印刷잉크 또는 그림색 물감의 製造
6. 出力의 合計가 0.75킬로와트이상의 原動機를 사용하는 塗料의 뿜질
7. 亞黃酸까스를 사용하는 物品의 漂白
8. 骨炭 기타 動物質炭의 製造
9. 羽毛類의 洗滌·染色 또는 漂白
10. 넝마, 부스럭솜, 휴지, 헌실 기타 이와 類似한 것의 消毒, 選別, 洗滌 또는 漂白
11. 製材, 製綿, 古綿의 再製·起毛·反毛 또는 벨트의 製造로서 原動機를 사용하는 것
12. 뼈·뿔·조개類의 쪼갬 및 乾燥·硏磨 또는 3臺이상의 硏磨機에 의한 金屬의 乾燥·硏磨로서 原動機를 사용하는 것
13. 鑛物·炭石·土砂·硫黃·金屬·유리·벽돌·陶磁器·뼈 또는 조개껍질의 粉碎로서 原動機를 사용하는 것
14. 먹, 懷爐灰 또는 煉炭의 製造
15. 活字 또는 金屬工藝品의 鑄造(印刷所에서의 活字의 鑄造를 제외한다)
16. 기와·벽돌·土器·陶磁器·人造숫돌·독 또는 琺瑯·鐵器의 製造
17. 유리의 製造 또는 砂吹
18. 動力鎚를 사용하는 金屬의 鎚造
1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製造 또는 씨멘트空袋를 事後 처리하는 것으로서 出力의 合計가 2.2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原動機를 사용하는 것
20. 비누의 製造
21. 魚粉 또는 魚粉을 原料로 하는 飼料의 製造